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8. 11. 28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복지위원에게 증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, 기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”을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“운영”을 “정수 및 운영”으로 함(안 제1조)
- 나. “모자가정”을 “한부모가족”으로 하고,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항”을 “법 제2조제1호”로 함(안 제5조제1호)
- 다. “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의한 긴급지원 대상자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발굴 및 신고”로 함(안 제5조 제4호)
- 다. 안 “제9조”를 안 “제10조”로 하고, 안 “제10조”를 안 “제11조”로 하며, 안 제9조에 “(증표교부) 구청장은 복지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, 그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.”를 신설 함(안 제9조)
- 라. “수당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”를 “수당”으로 함(안 제10조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중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”을 “「사회복지사업법(이하 ”법“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“운영”을 “정수 및 운영”으로 한다.

안 제5조제1호중 “모자가정”을 “한부모가족”으로 하고,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항”을 “법 제2조제1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의한 긴급지원 대상자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발굴 및 신고

안 “제9조”를 안 “제10조”로 하고, 안 “제10조”를 안 “제11조”로 하며,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, 같은 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.

제9조(증표교부) 구청장은 복지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, 그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.

안 제10조중 “수당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”를 “수당”으로 한다.

[별표]

복지위원증의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(제9조관련)

(앞면)	(뒷면)
<p>복지위원증</p> <p>①</p> <p>④</p> <p>②</p> <p>③ 마포구 00동</p>	<p>⑤</p> <p>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</p> <p>위 사람은 「사회복지 사업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임을 증명함</p> <p>⑥ (인)</p> <p>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</p>

- (비 고) 1. 복지위원증의 규격은 5.5cm(가로)×8.5cm(세로)로 한다.
2. 복지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.
- ① 사진
 - ② 성명
 - ③ 소속기관명
 - ④ 철인(발급기관의 철인)
 - ⑤ 발급번호
 -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

수정안 대비표

원	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「사회복지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----- -----정수 및 운영-----</p>
<p>제5조(위원의 직무) (생략).</p> <p>1. 지역사회 저소득 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·<u>모자가정·요보호자</u> 등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(이하 “사회복지대상자”라 한다)에 대한 선도 및 상담</p> <p>2.~3. (생략)</p> <p>4. <u>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(신설)</p>	<p>제5조(위원의 직무) (원안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<u>한부모가족</u>----- <u>법 제2조제1호</u>-----</p> <p>2.~3. (원안과 같음)</p> <p>4. 「<u>긴급복지지원법</u>」 제5조에 의한 긴급지원 대상자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<u>발굴 및 신고</u></p> <p>5.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9조(증표교부) 구청장은 복지위원 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, 그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.</p>

원 안	수 정 안
<p>제9조(수당 등)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수당 등) _____ _____수당_____</p>
<p>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1조(시행규칙) _____ _____</p>